[별지 제105호서식] <신설 2009.4.7>

#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①법 인 명(조 합 명) | | ②사업자등록번호 | - - - |
| ③대 표 자 성 명 | | ④법인등록번호 | - |
| ⑤사업장(조합)소재지 | | ⑥전 화 번 호 | ) - |

| | |
|---|---|
|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| |
| ⑧ 자기자본 총액 | |
| ⑨ 과세표준(⑦-⑧) | |
| ⑩ 세 율 | |
| ⑪ 산출세액 | |
| ⑫ 공제세액 | |
| ⑬ 차감납부세액 합계(⑭+⑮+⑯) | |
| ⑭ 1차연도 납부세액 | |
| ⑮ 2차연도 납부세액 | |
| ⑯ 3차연도 납부세액 | |

신고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0조의16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 및 「국세기본법」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,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: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

**세 무 서 장** 귀 하

* 동업기업으로 전환한 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서식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